



# 산업안전보건법 **전부\*** 개/정/안/내

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**법의 보호대상을 확대**하고, **유해·위험작업 도급을 금지**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령 **전부**를 개정합니다.



## 산업안전보건법 이렇게 바뀝니다!



### 법의 보호대상이 확대 됩니다! (근로자 → 노무를 제공하는 자)

- ▣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 종사자까지 확대되었고,
- ▣ 앞으로 새로운 노동관계를 고려하여 보호대상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.



### 유해·위험 작업의 사내 도급이 금지 됩니다!

- ▣ 도급작업, 수은·납·카드뮴의 제련·주입·가공·가열작업, 허가대상물질을 제조·사용하는 작업의 **사내 도급이 금지**되고 도급금지, 도급승인, 재하도급금지 위반 시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.

\* 단,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내 도급을 허용  
 ① 일시·간헐적인 작업 ② 하청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원청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

- ▣ 급성 독성,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사내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
# 산업안전보건법 이렇게 바뀝니다!



## 원청의 책임범위 및 처벌수준이 강화 됩니다!

- ▶ 원청이 안전·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를 원청 사업장 전체와 원청이 지정·제공한 장소 중 원청이 지배·관리하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확대됩니다.
- ▶ 원청이 안전·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 수준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고, 노동자가 사망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.



## 사업주의 처벌수준이 강화 됩니다!

- ▶ 사업주가 5년 내에 두 번 이상 안전·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는 경우 형의 1/2까지 가중하도록 하였고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이 10억원으로 상향됩니다.
- ▶ 안전·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자를 사망케 한 자에게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200시간 내의 범위에서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.



##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!

- ▶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로 하여금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 하고, 설계·시공 단계에서는 안전보건대장의 이행 등을 확인토록 하였습니다.
- ▶ 건설공사 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·기구 등이 설치·해체·작동되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·보건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.
- ▶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, 사업주는 등록자에게 타워크레인의 설치·해체 작업을 맡겨야 합니다.



##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가 개선됩니다!

- ▶ 물질안전보건자료 정보 비공개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.
- ▶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비공개하더라도 그 위험성을 유추할 수 있도록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은 기재하여야 합니다.



## 기타 신설 및 개선 사항

- ▶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·보건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 보고 및 승인을 받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.
- ▶ 사업주는 위험성 평가 시 해당 작업장의 노동자를 참여시켜야 합니다.
- ▶ 정부 책무의 하나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및 지도·지원을 추가하는 등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신설하거나 개선됩니다.



시행 시기

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개정법률은 2020. 1. 16.부터 시행됩니다.

[ 예외 ] • 물질안전보건자료 규정 : 2021. 1. 16.부터 시행

•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규정 : 2021. 1. 1.부터 시행